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71
----------	------

발의연월일 : 2017. 6. 13.

발의자 : 노옹래 · 조승래 · 서영교

박남춘 · 유동수 · 강창일

박찬대 · 오영훈 · 전재수

정성호 · 안규백 · 김병욱

박정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직원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신청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음.

군인공제회, 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주요 공제단체 관련법에서 급여 및 공제금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해당 조항을 신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확히 밝혀 회원과 공제회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이에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24조의2(소멸시효) 회원의 급여</u> <u>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u> <u>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u> <u>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u> <u>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u> <u>멸한다.</u></p>